

주식회사 하남교산대한대토제 74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임시주주총회의사록

주식회사 하남교산대한대토제7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(이하 “회사”)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일 시: 2026년 9월 18일 (금) 오후 5시

장 소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 본점 회의실

주 주 총 수 : 1명

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: 300,000주

출 석 주 주 수 : 1명

출석한 ㄹ주주가 소유한 주식수 : 300,000주

의장인 대표이사 정재영은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: 현물출자계약 체결의 건

의장은 제1호 의안을 상정하면서 정관 제12조 3항 제3호, 제17조에 따라 별첨 1 대토보상권자들과의 대토보상권(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, 향동, 하사창동, 교산동, 상사창동, 춘궁동, 덕풍동, 창우동 일원 토지 소유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확정된 권리)의 현물출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현물출자 대상인 별첨1 토지 등 소유자들의 대토보상권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물출자가액 금 22,292,430,000원 [발행주식수 보통주식 22,292,430주, 1주당 액면가액 1,000원, 발행가액 1,000원/대토원금 1,000원 당 1주를 부여하기로 하고 1주 미만은 현금으로 지급함] 으로 하여 토지소유자(대토보상권자)들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을 설명하고,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출석주주 전원이 서면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찬성으로 의사표시를 표명한 바,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제2호 의안 : 현물출자(대토보상권)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

의장은 제2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아래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을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, 출석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으로 안건을 원

안대로 승인가결하다.

- 다 음 -
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22,292,430주 기명식 보통주식
2. 신주식의 액면가격 : 1주 금 1,000원
3. 신주의 발행가격 : 1주 금 1,000원 (총 금 22,292,430,000원)
4. 현물출자인도일(납입기일) : 2026년 9월 일
5. 신주의 인수방법 및 실권주의 처리
 - (1) 발행하는 신주를 정관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전부 인수함.
 - (2) 1,000원 미만의 자본금은 단수 처리하여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.
 - (3) 단주 등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함.
 - (4) 주권은 미발행하는 것으로 함.
6. 현물출자 내역

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: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음

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558호(2019년 10월 15일)로 사업인정고시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현물출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단서 규정에 따른 대토보상권(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자족1-④을 매입,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체 포함)

7. 현물출자자의 성명 및 이에 부여할 주식의 수

현물출자자	현물출자금액	이에 부여할 주식수
공강호	1,523,151,000 원	1,523,151 주
최정휴	1,190,600,000 원	1,190,600 주
이정균	1,786,361,000 원	1,786,361 주
김수현	1,208,640,000 원	1,208,640 주
김영순	611,750,000 원	611,750 주
박춘환	2,396,600,000 원	2,396,600 주

박재우	246,124,000 원	246,124 주
강순봉	4,419,707,000 원	4,419,707 주
김승현	1,700,000,000 원	1,700,000 주
오영식	2,605,485,000 원	2,605,485 주
한상식	2,440,435,000 원	2,440,435 주
윤주방	572,407,000 원	572,407 주
고상옥	400,000,000 원	400,000 주
최용길	1,191,170,000 원	1,191,170 주
합 계	22,292,430,000 원	22,292,430 주

제3호 의안 : 토지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

의장은 당사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승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,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으로 제 3 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.

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오후 6시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 및 이사가 이에 기명, 날인하다.

2026년 9월 18일

주식회사 하남교산대한대토제7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 표 이 사 정 재 영

